

제16조(회계)

협회의 회계 상황은 매년 첫번째 회의를 간사가 보고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규약개정)

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8조(보칙)

협회가 운영상 필요한 기타 사항은 협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'93. 7. 6.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'93. 7. 21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산업과장

나. 제안이유

- '93. 2. 1 오정구가 신설되고 남구가 소사구로 중구가 원미구로 구명칭이 변경되어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실정에 맞게 구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함.

다. 주요골자

- 농지관리위원회 명칭개정
- 농지관리위원회 정수개정
- 위원의 추천 및 위촉

3. 질의 및 답변내용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및 16조 내용은?	○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임.
○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시·구·읍에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부천시는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는가?	○ 자치구가 아닌 구도 해당되는지 상급기관에 질의한 결과 부천시의 구도 해당되어 3개구에 설치하게 되었음
○ 소사구는 농업관련 기관 추천위원이 없는 이유는?	○ 법상 관할구역내로 제한하고 있다보니 남구는 농업관련 기관이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

없 음

나. 찬성토론

두 개구가 세 개구로 변경된 것으로 위원회 설치 증가는 불가피한 사항임.

5. 수정안 내용

없 음

6. 심사결과

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제6조(위원의 추천 및 위촉)사항 중 동장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시, 시의원의 협조를 얻어 추천토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행정부 고유권한 사항을 인정하자는 반대의견이 나와 철회

8. 기타 필요사항

없 음

9. 체계적 심사내용

없 음

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182
의 결	제21회
년 월 일	(93. 7. 23)

제출년월일 : 1993. 7. 6

제 안 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'93. 2. 1 오정구가 신설되고, 남구가 소사구로, 중구가 원미구로 구 명칭이 변경됨과 함께 관할구역이 일부 변경되므로 이에 맞게 구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농지관리위원회 명칭개정(조례제2조)
- 농지관리위원회 정수개정(조례 제5조의 별표1)
- 위원의 추천 및 위촉(조례 제6조)

[법적근거]

-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, 제16조

○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3조

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농지관리위원회 명칭) 농지관리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원미구 농지관리위원회
2. 소사구 농지관리위원회
3. 오정구 농지관리위원회

제5조(위원회의 위원정수) [별표1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위원의 추천 및 위촉) ① 각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 개발위원회(동 개발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개발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합의체)를 소집하여 영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에 의한 원미구, 소사구, 오정구의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“별표2”의 농지임차료상환이 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는 “별표2”중 남구, 중구의 구분을 두지 않고 이 조례개정 당시의 원미구, 소사구, 오정구가 관할하는 동을 그 구의 관할로 한다.

(별지)

[별표1]

농 지 관 리 위 원 정 수

구 분 구 별	개	구청장	농 민 대 표 위 원	농업관련기관추천위원
원 미 구	15	1	12	농촌지도소 1
			역곡1동 1	농업협동조합 1
			역곡2동 1	
			춘 의 동 2	
			약 대 동 2	
			중 동 2	
			상 동 4	

구 분 구 별	개	구청장	농 민 대 표 위 원	농업관련기관추천위원
소 사 구	13	1	12	
			소사본1동 1	
			소사본3동 1	
			범 박 동 4	
			피 안 동 2	
			억 곡 3 동 2	
			송 내 1 동 1	
			송 내 2 동 1	
오 정 구	17	1	14	2
			성 곡 동 5	농업협동조합 1
			원종1동 2	농지개량조합 1
			교강1동 2	
			오 정 동 4	
			신 흥 동 1	

신 · 구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	안
○ 제2조(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)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.		○ 제2조(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)		
1. 남구 농지관리위원회		-----		
2. 중구 농지관리위원회		1. 원미구 농지관리위원회		
		2. 소사구 농지관리위원회		
○ 제5조(위원회의 위원정수)		3. 오정구 농지관리위원회		
“별 표 1”		○ 제5조(위원회의 위원정수)		
		“별 표 1”		
○ 제6조(위원의 추천 및 위촉)		— 구별 위원내역 변경 : 34인을 45인으로		
① 각 동장은 -----		○ 제6조(위원의 추천 및 위촉)		
-----		① 각 동장은 -----		
-----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-----		-----		
-----추천할 수 있다.		-----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-----		
		-----추천할 수 있다.		

